



정예화된 **선진강군**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서

2016. 12. 19.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4
제2조(적용범위)	4
제3조(용어정의)	4
제4조(방 침)	6

제2장 관련법규 해설

제5조(항공법)	7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7
제7조(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8

제3장 초경량비행장치의 이해

제8조(항공기 등의 구분 및 안전기준)	9
제9조(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 및 유형)	10
제10조(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행위의 유형)	13
제11조(안전관리 제도)	14
제12조(조종자 준수사항)	17
제13조(사고의 보고 등)	18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및 위규비행시 처벌 및 과태료)	19

제4장 공역의 구분

제15조(공역의 구분)	21
제1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대상공역)	22
제17조(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	23

제5장 비행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

제18조(비행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 일반) -----	27
제19조(공역별 관할기관 중복시 승인 및 협조절차) -----	29

제6장 비행승인업무 단계별 검토 기준

제20조(접수단계) -----	30
제21조(검토단계) -----	30
제22조(회신단계) -----	31
제23조(비행승인 이후 안전관리 단계) -----	31
제24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리대장 유지) -----	32

제7장 위규비행 관리

제25조(위규비행 발생시 조치절차) -----	33
제26조(비행안전장애 처리) -----	33
제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 장애사항 기록유지) -----	34

제8장 행정사항

제28조(시행일) -----	34
-----------------	----

표 목 록

3-1. 초경량비행장치의 유형 -----	10
3-2. 등록사업별 이용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	13
3-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제도 개요 -----	14
3-4.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및 위규비행의 유형별 처벌 개요 -----	20
4-1. 공역의 구분 -----	21
5-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시한 -----	28

별 지 목 록

1.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의 범위 및 요도 -----	35
2. 초경량비행장치 유형별 비행승인 대상 공역 -----	46
3.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 부터의 거리 -----	49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서식) -----	50
5.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 -----	52
6.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증명서 (서식) -----	53
7.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서식) -----	54
8. 초경량비행장치 사업 등록증 (서식) -----	55
9.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리대장 (서식) -----	56

부 록

1.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 -----	57
2. 자주 묻는 질문 -----	6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절차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된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이하 '군 관할 공역') 내의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에 대한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에 대한 승인 및 비행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 부대(서)와 군 관할공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 또는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항공법」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 "군 관할 공역"이란 「항공법」에서 정하는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중 국방부 소속의 부대(서)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공역을 말한다.
4. "관제권"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 5NM 이내의 범위에서 비행장 표고로부터 5,000ft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비행장의 관제탑이 관할하는 공역을 말한다.
5. "비행금지구역"이란 국가 주요 시설물 보호, 국방상, 그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다.

6. "비행제한구역"이란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는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7.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란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활동을 보장하는 공역을 말한다.
8.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란 제7호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을 제한하는 공역을 말한다.
9. "항공레저스포츠"란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10. "항공기대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적용되는 대여 서비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비료, 농약,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사진촬영, 측량, 관측, 탐사, 조종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한다),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기구류, 착륙장치가 없는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해주는 서비스
 - 1)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한다) 2)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 다.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13. "이착륙장"이란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항공법규」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방침)

1. 국방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은 군 관할공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관한 권한을 제17조에 따른 '군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의 장'에게 위임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서)장은 본 지침서에 따라 해당 관할공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 각급 부대(서)는 이 지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규정 또는 비행정보간행물(FLIP),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명시 할 수 있다.
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 및 비행제한구역(R75) 내에서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 시에는 수도방위사령관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보안절차(보안점검, 경로·고도 변경지시 및 운항 제한 등)를 따라야 한다.
4. 군 관할공역 내에서의 민간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절차 및 제한사항은 「항공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되, 비행승인 업무시 민원처리 기한은 군 공역별 관할부대(서)의 해당공역 사용계획(각종 항공작전)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과 「항공법」 제23조제2항의 '비행승인'의 차이는 「항공법」 개정 <2014. 1. 14.>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본 지침서에서는 '비행승인'으로 단일화하여 적용한다.
6. 이 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대한 기준은 「항공법」을 따른다.

제 2 장 관련법규 해설

제5조(「항공법」)

1.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비행장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안정성인증’, ‘사용목적의 제한 및 보험가입’, ‘사고보고’, ‘조종자 준수사항’, ‘구조 활동을 위한 장비 구비’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
2. 「항공법」 제172조 및 제182조 ~ 제183조의4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3. 「항공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3, 제65조~제68조2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예외사항 등을 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및 안전관리절차 명시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및 안전관리절차 : 제3장 ~ 제7장 참조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 「동 규정」 제41조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법」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항공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
2. 「동 규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법」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항공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에게 각각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권한을 각 공역별 관할기관의 장에게 위탁

제7조(「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1.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7조에 근거한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국가정보원 발행)’을 마련하여 항공사진 촬영 허가 업무수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
2.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7조에 따라 국방정보본부(보안암호정책과)에서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부록 제1호)’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항공촬영 허가 업무를 수행

※ 「보안업무규정」 제37조 (측정의 실시)

- ②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시설 및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 촬영의 신청 및 허가기준 명시

* 항공사진 촬영 신청·허가 절차 : 부록 제1호 참조

제 3 장 초경량비행장치의 이해

제8조(항공기 등의 구분 및 안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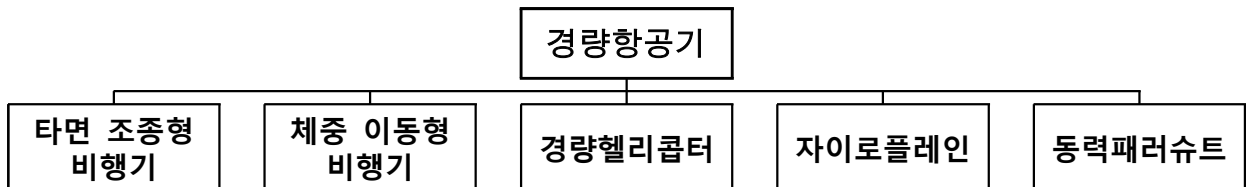
1. 항공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의 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되며,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른 공통된 안전기준 적용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는 ‘형식증명’ 필요, 「항공법」 제17조)



2. 경량항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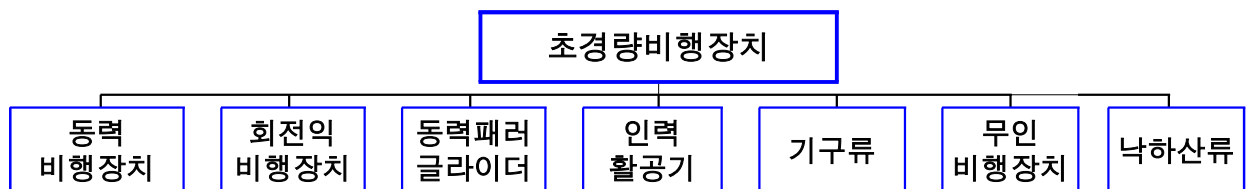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중 2인승,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 것으로 국내 안전기준 적용 (형식증명 대신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함. 「항공법」 제24조)



※ 엔진을 장착하고 사람이 탑승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비행성능과 규모가 큰 것을 대상으로 항공기에 준한 안전관리를 위해 경량항공기 제도 마련 (2009. 6. 9.)

3.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적은 규모의 비행장치로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인력활공기 등으로 구분되며, 국가별 안전기준 적용 (형식증명 대신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함. 「항공법」 제23조)



4. 항공기 등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엔진을 장착하고 사람이 탑승하는 항공기 등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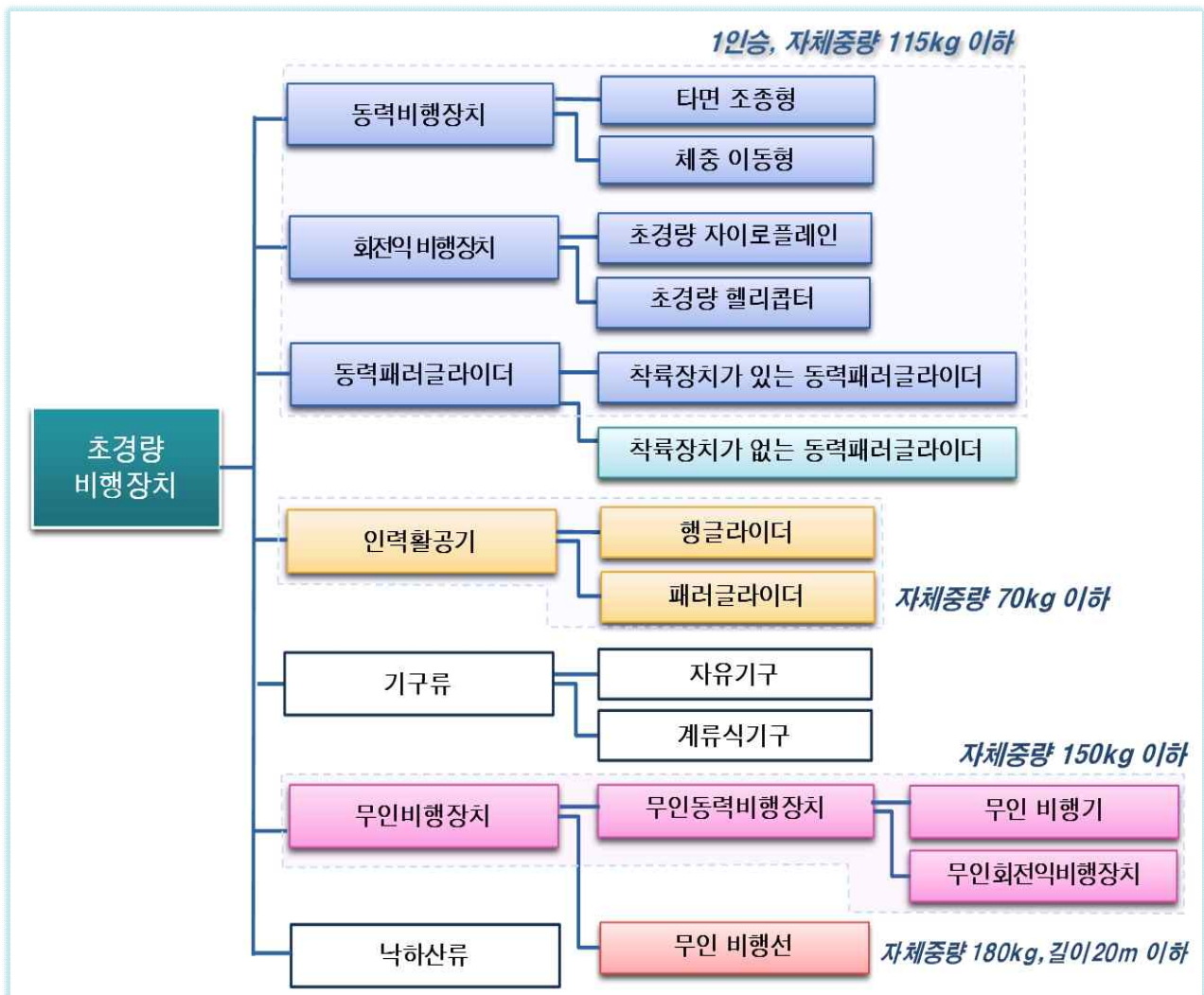
구 분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항공기
무게기준	자체중량 115kg이하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
좌석 수	1인승	2인승 이하	제한 없음

나. 항공기 중 활공기는 70kg 이하를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

다. 무인항공기 중 150kg(무인비행선 180kg) 이하를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

제9조(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 및 유형)

1.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





< 표 3-1 : 초경량비행장치의 유형 >

2. 초경량비행장치의 유형



가.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인 것
-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
-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

타면 조종형 (ULP ; Ultra Light Plane)		체중 이동형 (ULM ; Ultra Light Motorize)	
	일반 항공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무게 및 탑승 인원 에 제한을 받음.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 평지에서 이륙 가능. 체중을 이용, 방향 조종



나. 회전익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로서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다음의 비행 장치로써 좌석이 1개이고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인 것

-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 초경량 헬리콥터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 이라 할 수 있으며,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		일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무게 및 탑승인원에 제한을 받음

다. 동력패러글라이더 : 낙하산류에 추진 장치를 부착한 다음의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좌석이 1개 이고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인 것



착륙장치가 없 는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 있 는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조종자의 등에 엔진을 매고, 조종 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		패러글라이더에 동체 (Trike : 삼륜차)를 장착한 것으로 무게 및 탑승인원에 제한을 받음

라. 인력활공기 :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 글라이더로서 자체 중량이 70kg 이하인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p>탑승자가 공중에서 체중을 이동, 방향조종</p> <p>* 조작 쉽고, 비교적 안전함</p>		<p>동력장치 없이 사람이 달려가며 이륙, 비행 후 두발로 착륙하는 비행장치</p>



마. 기구류 : 기체의 성질 · 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유인 자유기구 또는 무인 자유기구
- 계류식 기구

자유 기구		계류식 기구	
	<p>온도차에 의한 공기부력으로 상승하는 기구, 버너(Burner) 및 사람이 타는 탑승장치와 연료 용기를 탑재</p>		<p>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 부력을 이용하며, 연결된 케이블을 풀거나 감는 방식으로 상승 및 강하하는 기구</p>

바.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자체 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의 비행장치
- 무인비행선 : 자체 중량 180kg 이하이고 길이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의비행장치	
	<p>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조종하며,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 사용</p>		<p>구조적으로 회전익항공기와 같고 촬영, 농약살포 등으로 활용</p>

※ 드론 (무인비행장치 일종)		무인비행선	
	<p>일반적으로 레저, 정찰, 촬영, 감시용으로 사용되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체중량 12kg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p>		<p>기구에 추진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각종 행사, 축하비행 및 광고 등에 사용</p>

사. 낙하산류 : 항력을 발생시켜 낙하하는 사람, 물체의 속도를 늦추는 비행장치

제10조(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행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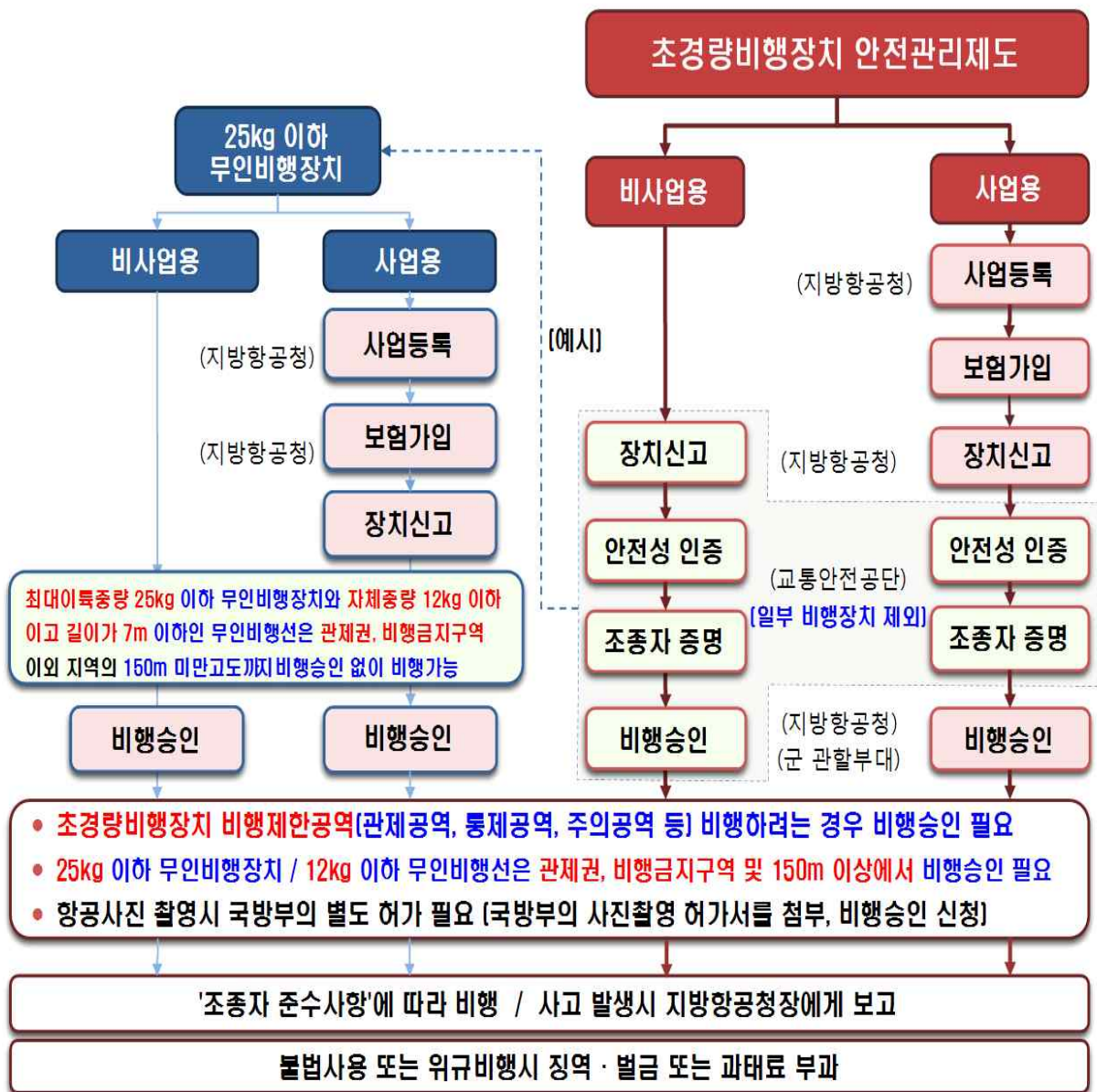
1.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행위는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등록과 제11조 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2.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영리행위는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구분한다.
 - 가. 항공기대여업 (이하 ‘대여업’) : 초경량비행장치를 유상으로 대여 (항공 레저스포츠사업에서 사용되는 대여 서비스는 제외)
 - 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이하 ‘사용사업’)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씨앗뿌리기 등 농업지원, 사진촬영, 관측, 조종교육 등을 제공한다.
 - 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하 ‘레저사업’) : 인력활공기, 기구류, 착륙장치가 없는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
 - 2)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
 - 3)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3. 영리행위(등록사업)별 이용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별 이용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대여업	사용사업	레저사업
1	동력비행장치	○	×	×
2	인력활공기	○	×	○
3	기구류	○	×	○
4	회전익 비행장치	○	×	×
5	동력 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 있는 것	○	×
		착륙장치가 없는 것	○	○
6	무인비행장치	○	○	×
7	낙하산류	○	×	○

< 표 3-2 : 등록사업별 이용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

제11조(안전관리 제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비행계획 이전에 「항공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한 비행장치를 등록 및 보험에 가입(영리 목적으로 비행시)하고 안전성 인증, 보유 신고 및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아 공역별 관할 기관(지방항공청 또는 관할 군부대 등)으로 부터 비행승인을 받아 비행하여야 하며, 비행 중에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사고발생시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제도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표 3-3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제도 개요 >

1. 사업 등록

- 가.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는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나. 등록방법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311조, 제311조의2, 제313조를 따른다.

2. 보험 가입

- 가.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나. 보험 또는 공제 보상금액 범위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3을 따른다.
- 다. 비행시 보험가입 증명서가 요구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과 같다.
 - 1) 항공기 대여업에 사용하는 모든 초경량비행장치
 - 2)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초경량비행장치
 -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초경량비행장치

3.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 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사람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 및 신고증명서(별지 6 호 서식) 발급받아 비행시 휴대하여야 한다.
- 나. 신고방법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를 따른다.
- 다. 신고대상이 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과 같다.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분			신고 대상	
			비사업용	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	○
2	인력활공기	행글라이더	×	○
		패러글라이더	×	○
3	기구류		○	○
	계류식 기구	유인	○	○
		무인	×	○
4	회전의 비행장치		○	○
	초경량 헬리콥터		○	○
5	동력 패러글라이더		○	○

6	무인비행장치	무인 동력비행장치	계류식	×	○
			비계류식	12kg 초과	○
		12kg 이하		×	○
		무인비행선	계류식	×	○
	비계류식		12kg, 7m 초과	○	○
		12kg, 7m 이하	×	○	
7	낙하산류			×	○
8	- 연구기관이 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해 제작한 비행장치 - 판매되지 않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비행장치			×	×

4.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 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 등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별지 7 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 나. 안전성 인증의 발급 방법은 「항공법」 제23조제4항을 따른다.
- 다. 비행시 안전성 인증이 요구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과 같다.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분				안전성 인증 대상	
				비사업용	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	○
2	인력활공기			×	레저사업 ○
3	기구류	자유기구	유인	○	○
			무인	×	×
		계류식 기구	유인	○	○
			무인	×	×
4	회전의 비행장치			○	○
5	동력 패러글라이더			○	○
6	무인 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 12kg, 7m 초과		○	○
		(자체중량) 12kg, 7m 이하		×	×
7	낙하산류			×	레저사업 ○
8	연구·개발 중인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시험비행 사전에 안전성 입증자료, 국토부에 제출 필요)			×	×

5.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 등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으로부터 조종자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나. 조종자 증명의 발급 방법은 「항공법」 제23조제3항을 따른다.

다. 비행시 조종자 증명이 요구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과 같다.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분			조종자 증명 대상	
			비사업용	사업용
1	동력비행장치		○	○
2	인력활공기	행글라이더	×	레저사업 ○
		패러글라이더	×	레저사업 ○
3	기구류	자유기구	유인	○
			무인	×
		계류식 기구	×	×
4	회전의 비행장치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
			초경량 헬리콥터	○
5	동력 패러글라이더		○	○
6	무인비행장치	무인 동력비행장치	(자체중량)12kg, 7m 초과	×
			(자체중량)12kg, 7m 이하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12kg, 7m 초과	×	사용사업 ○
		(자체중량)12kg, 7m 이하	×	×
7	낙하산류		×	레저사업 ○

6.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신청

가.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비행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는 제5장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조종자 준수사항)

1. 조종자 금지사항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다. 제1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대상공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는 행위.
- 라.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무인비행장치 적용 제외)
- 마. 별지 3 호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무인비행장치 적용 제외)
- 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150m 미만의 지상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시험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 조종자 유의사항

- 가.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 나.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다. 무인비행장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시험비행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비행 전에 해당 비행장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 중단
 -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
 - 3) 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
 -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 유지

제13조(사고의 보고 등)

1.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보유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나.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 라. 사고의 경위
 - 마.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 바.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단, 인력활공기, 계류식 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 가.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 나. 조난구조용 장비(위치추적이 가능한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및 위규비행시 처벌 및 과태료)

1.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정성인증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탑승시켜 비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제10조2호에 따른 영리목적 이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초경량비행장치 위규사용시 과태료

-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1호 다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나. 초경량비행장치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0조2호에 따른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라. 제12조에 따른 비행 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 제11조제3호에 따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2) 제13조제2호에 따라 구조를 위한 위치추적기 등의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 하지 않고 비행한 자
 - 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 제13조제1호의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사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 2)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이전신고,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및 위규비행시 처벌·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법사용, 위규비행의 유형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징역	벌금	과태료
① 장치 신고	미신고	6개월 이하	500만원 이하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100만원 이하
② 비행승인 없이 비행시			200만원 이하	
③ 안전성 인증 없이 비행시				500만원 이하
④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시				300만원 이하
⑤ 영리목적 사용 (제10조제2호)	등록사업 이외	6개월 이하	500만원 이하	
	보험 미가입			500만원 이하
⑥ 조종자 준수사항 미준수시				200만원 이하
⑦ 구조활동 보조장비 미구비				100만원 이하
⑧ 사고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0만원 이하
⑨ 상기 ③,④,⑤ 위반하고 사람을 탑승시켜 영리비행시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 표 3-4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및 위규비행의 유형별 처벌 개요 >

5. 제14조제1호에 따른 불법사용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에서 의법조치하고, 제14조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 4 장 공역의 구분

제15조(공역의 구분) 본 지침서에 적용되는 공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법에 따른 공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으로써 「항공법」에서 정한 “사용목적에 따른 공역의 구분”을 적용하며, 공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의 범위 및 요도 : 별지 1 호 참조)

구 분		내 용
관제공역	관제권	비행장과 그 주변 공역으로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300m(1,000ft) 이상의 공역 중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 교통량이 많은 헬기장 등과 그 주변 공역으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 공역	조연구역	- 영공의 300m(1,000ft) 미만, 공해상의 1650m(5500ft) 미만 공역으로 비행정보업무(악기상, 공역통제 정보 등)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 현재, 조연구역(항공교통조언업무 제공 등)은 미지정 상태임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이외의 공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표 4-1 : 공역의 구분 >

제1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대상구역)

1. 비사업용 초경량비행장치 (취미활동, 레저활동 등에 적용)

가.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구역'에서 비행을 계획할 경우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법」 제23조제2항)

나. 다만, 다음의 경우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8조)

- 1) 관제구역, 통제구역, 주의구역 이외 지역에서 인력활공기의 비행
- 2) 관제구역, 통제구역, 주의구역 이외 지역에서 무인 계류식기구의 운영
- 3) 관제구역, 통제구역, 주의구역 이외 지역에서 150m 미만 지상고도에서의 유인 계류식기구의 운영
- 4)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150m 미만 지상고도에서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이하인 무인비행선**의 비행
- 5) 군 비행장을 제외한 민간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중심 반경 3km, 지상고도 150m의 범위 내에서는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 또는 이착륙장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 비행승인 불필요

※ 「항공법」 관련조항 해설

- 인력활공기, 무인 계류식 기구,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비행선**, 150m 미만 고도에서 계류식 기구, (관제권, 통제구역 이외의 공역에서) 농업지원 사업용 및 방역업무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을 계획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비행승인 제외사항은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을 제외한 **비관제공역**에서 적용 가능하며, (시행규칙 제68조)
- 예외적으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의 무인비행선**에 대하여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을 제외한 지역의 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은 관할기관의 허가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2. 사업용 초경량비행장치 (제10조 2항의 대여업, 레저사업, 사용사업에 적용)

가.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구역'에서 비행을 계획할 경우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법」 제23조 제2항)

나. 다만, 다음의 경우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8조)

- 1) 관제구역, 통제구역, 주의구역 이외 지역에서 지상고도 150m 미만에서 계류식기구 운영
- 2) 관제구역, 통제구역, 주의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비료, 농약, 씨앗 뿌리기 등 농업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 3) 관제구역, 통제구역, 주의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업무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4)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150m 미만 지상고도에서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이하인 무인비행선의 비행
- 5) 군 비행장을 제외한 민간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중심 반경 3km, 지상고도 150m의 범위 내에서는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 또는 이착륙장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 비행승인 불필요

※ 「항공법」 관련조항 해설

- 150m 미만 고도에서 계류식기구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지원과 가축전염병 방역업무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및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 운영은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 예외적으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의 무인비행선에 대하여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을 제외한 지역의 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은 관할기관의 허가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3. 초경량비행장치 유형별 비행승인 필요공역의 세부내용은 별지 2 호를 적용한다.

제17조(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는 「항공법」에 따른 공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별 관할기관을 적용하며, **관할공역 내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비행승인 업무를 담당한다.**

1. 관제구역 (도면 : 별지1호 참조)

가. 관제권

구분	공역범위	관할기관	연락처
1 인 천	별지1호 참조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전화 : 032-740-2153 팩스 : 032-740-2149
2 김 포			
3 양 양			

구분	공역범위	관할기관	연락처
4 5 6 7 8	별지1호 참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전화 : 051-974-2153 팩스 : 051-971-1219
9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10		광주기지 (계획처)	전화 : 062-940-1110~1 / 팩스 : 062-941-8377
11		사천기지 (계획처)	전화 : 055-850-3111~4 / 팩스 : 055-850-3173
12		김해기지 (작전과)	전화 : 051-979-2300~1 / 팩스 : 051-979-3750
13		원주기지 (작전과)	전화 : 033-730-4221~2 / 팩스 : 033-747-7801
14		수원기지 (계획처)	전화 : 031-220-1014~5 / 팩스 : 031-220-1167
15		대구기지 (작전과)	전화 : 053-989-3211~2 / 팩스 : 064-747-8211
16		서울기지 (작전과)	전화 : 031-720-3230~3 / 팩스 : 031-720-4459
17		예천기지 (계획처)	전화 : 054-650-4114 / 팩스 : 054-650-5757
18		청주기지 (계획처)	전화 : 043-200-2111~2 / 팩스 : 043-200-3747
19		강릉기지 (계획처)	전화 : 033-649-2021~2 / 팩스 : 033-649-3790
20		중원기지 (작전과)	전화 : 043-849-3084~5 / 팩스 : 043-849-5599
21		서산기지 (작전과)	전화 : 041-689-2020~3 / 팩스 : 041-689-4455
22		성무기지 (작전과)	전화 : 043-290-5230 / 팩스 : 043-297-0479
23		포항기지 (작전과)	전화 : 054-290-6322~3 / 팩스 : 054-291-9281
24		목포기지 (작전과)	전화 : 061-263-4330~1 / 팩스 : 061-263-4754
25		진해기지 (군사시설보호과)	전화 : 055-549-4231~2 / 팩스 : 055-549-4785
26 27 28		항공작전사령부 (비행정보반)	전화 : 031-644-3000 (교환) → 3706 E-MAIL : avncmd3685@army.mil.kr (발송 후 유선연락)
29		미공군 오산기지	전화 : 0505-784-4222 문의 후 신청
30		군산기지	전화 : 063-470-4422 문의 후 신청
31		미육군 평택기지	전화 : 0503-353-7555 문의 후 신청

나. 관제구

공역 범위	관할기관	연락처
관제권, 비행장교통구역 및 통제공역, 주의공역을 제외한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300m(1,000ft) 이상의 고도 * 공해상 1650m(5500ft) 이상	서울지방항공청 (전화 : 032-740-2153 / 팩스 : 032-740-2149) 부산지방항공청 (전화 : 051-974-2153 / 팩스 : 051-971-1219) 제주지방항공청 (전화 : 064-797-1745 / 팩스 : 064-747-8211)	※ 해당지역에 대한 비행승인절차 : 제19조 적용

다. 비행장 교통구역

구분		공역 범위	관할기관	운영시간	연락처
1	가평	별지1 호 참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비행정보반)	월/화/수/ 목/금요일 07:00 ~ 22:00	전화: 031-644-3000 (교환) → 3706 E-MAIL : avncmd3685@army.mil.kr (발송 후 유선연락)
2	양평				
3	홍천				
4	현리				
5	전주				
6	덕소				
7	용인				
8	춘천				
9	영천				
10	금왕				
11	조치원				
12	포승	해군 6항공전단 (포승관제탑)	24시간	전화 :031-685-6263 문의 후 신청	
13	태안	한서대학교 (태안관제탑)	24시간	전화: 041-671-6011 / 팩스: 041-673-6019	

※ 운영시간 : 월/화/수/목/금요일 07:00 ~ 22:00

2. 비관제공역

공역 범위	관할기관	연락처
관제권, 비행장교통구역 및 통제공역, 주의공역을 제외한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300m(1,000ft) 미만의 고도 * 공해상 1680m(5500ft) 미만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전화: 032-740-2153 / 팩스: 032-740-2149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전화: 051-974-2153 / 팩스: 051-971-1219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전화: 064-797-1745 / 팩스: 064-747-8211

3. 통제공역 (도면 : 별지1호 참조)

가. 비행금지구역

구분	공역 범위	관할기관	연락처
1	P73 (서울 도심)	별지 1 호 참조	수도방위사령부 (화력과)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
2	P518 (휴전선 지역)		
			전화 : 02-524-3353 , 3419, 3359 팩스 : 02-524-2205
			전화 : 02-748-3294 / 팩스 : 02-796-7985

구분	공역 범위	관할기관	연락처
3	P61 A (고리원전)	합동참모본부 (공중중심작전과)	전화 : 02-748-3435 팩스 : 02-796-0369
4	P62 A (월성원전)		
5	P63 A (한빛원전)		
6	P64 A (한울원전)		
7	P65 A (원자력연구소)		
8	P61 B (고리원전)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전화 : 032-740-2153 팩스 : 032-740-2149
9	P62 B (월성원전)		
10	P63 B (한빛원전)		
11	P64 B (한울원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전화 : 051-974-2153 팩스 : 051-971-1219
12	P65 B (원자력연구소)		

나. 비행제한구역

구분	공역 범위	관할기관	연락처
1	R75 (수도권 지역)	수도방위사령부 (화력과)	전화 : 02-524-3353 , 3419, 3359 팩스 : 02-524-2205
2	기타	공군작전사령부 (공역관리과)	전화 : 031-669-7095 팩스 : 031-669-6669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2016.12월 현재 28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전체에 해당함 (별지 1 참조) - 관할기관 :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구분된 공역별 관할기관이 적용됨
--

4. 주의공역 (도면 : 별지 1 참조)

구분	공역 범위	관할기관	연락처
1	훈련공역	지방항공청	전화: 032-740-2353 / 팩스: 032-740-2149
2	군 작전구역	공군작전사령부 (공역관리과)	전화 : 031-669-7095 팩스 : 031-669-6669
3	위험구역		
4	경계구역		

제 5 장 비행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

제18조(비행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 일반)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4 호 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구역별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이 군기관(부대)인 경우 신청서와 함께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제1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제도에 부합하는 증명서. 단, 제11조에 따른 증명서별 발급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에 한함
 - 1)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는 '사업등록증' 사본 (별지 8 호 서식)
 -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사본
 -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증명서' 사본 (별지 6 호 서식)
 - 4)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서' 사본 (별지 7 호 서식)
 - 5) 초경량비행장치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자동차손해배상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대인 1억)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성능표, 사진(신고증명서 상의 신고번호를 확인 가능한 가로 15cm × 세로 10cm의 크기)
 - 다. 항공촬영이 목적인 경우, 부록 1 호에 따른 항공촬영허가서 사본
2. 원전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A구역, 반경 2NM)은 국가중요시설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비행신청은 국가기관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원전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의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인 및 민간비행업체의 비행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국가기관에 의한 신원조회 등의 보안성 검토를 필하고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체의 경우는 직접 비행신청 할 수 있다.
 - 나. 기타, 지역 특수성에 따른 정당한 목적으로 비행하고자 하는 개인 및 민간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를 통하여 비행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는 해당 비행에 대한 보안대책(기체 보안점검, 현장통제, 동승비행 등) 강구하여야 하며 원자력발전소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발전소	담당부서	연락처
P61A(고리원전)	고리본부 재난안전팀 / 예비군 대대	051-726-2885 / 2902
P62A(월성원전)	월성본부 방재대책팀 / 예비군 대대	054-779-2035 / 2901
P63A(한빛원전)	한빛본부 방재대책팀 / 예비군 대대	061-357-2035 / 2902
P64A(한울원전)	한울본부 방재대책팀 / 예비군 대대	054-785-2035 / 2901

- 공역별 관할기관은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비행안전 및 국가 주요시설 보호, 국방, 그밖의 공역별 설정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검토기준은 제21조를 따른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30일의 범위에서 비행기간 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 「항공법」 상의 반복비행 허가기간은 6개월(기존 30일 이내)로 개정('16.7.4.) 되었으나, 군 관할공역 내 반복비행 승인기준 은 현행(30일 범위) 유지(비행 감독 및 관리 측면 고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원스톱 비행승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시한은 다음과 같다.

관할기관 (제17조 적용)	비행승인 대상공역	비행승인 요청서 (근무일 기준)	
		제출시한	승인시한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	제17조 적용	3일 전	1일 전
수도방위사령부	P73A	5일 전	
	P73B, R75	3일 전	
관제권 관할 군기지	관제권	3일 전	
비행장교통구역 관할 군기지	비행장교통구역	3일 전	
공군작전사령부	제17조 적용	7일 전	
합동참모본부	원전지역 반경 3.6km	3일 전	3일전
	휴전선 일대(P518)	4일 전	
	NLL 일대(P518E/W)	7일 전	5일전

< 표 5-2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시한 >

6. 재난구호 활동 등 정부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긴급하게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여야 할 때는 군 공역별 관할기관에 우선으로 비행신청하고, 승인기관은 이를 검토 후 긴급 비행승인 할 수 있다. 다만, 긴급 비행승인 신청자는 해당 비행 종료 후 제1항에서 명시한 신청서를 사후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관련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역별 관할기관 중복시 승인 및 협조절차)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중 공역별 관할기관(지방항공청, 군부대 등)이 다른 공역(수평, 수직범위)에 걸쳐 비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4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에게 비행계획일의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예시 1) 이착륙장에서 비행을 시작하여서 군 관할공역에 착지하는 경우 등
- 2) 군 관할공역에서 비행을 시작하여 이착륙장 등에 착지하는 경우 등
- 3) 낙하산류를 사용하여 군 관할 주의공역 및 통제공역의 고도에서 스카이다이빙하여 군 관할공역 이외의 비관제 공역에 착지하는 경우

2. 제1항의 비행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각 지방항공청은 관할공역에 대한 비행승인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관할공역 이외의 공역에 대하여는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군부대)으로 검토 의뢰하고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비행승인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제 6 장 비행승인 단계별 검토기준

제20조(접수단계)

1. 공역별 관할기관은 접수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 요건의 충족 및 제18조에 따른 제출서류 요건의 충족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가. 지방항공청

- 1)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신청서
- 2) 신청서 상의 각종 증명자료는 등록대장을 통해 이상유무 확인
- 3) 항공촬영이 목적인 경우, 부록 1 호에 따른 항공촬영허가서 사본

나. 군 관할부대

- 1)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신청서
- 2) 신청서 상의 각종 증명자료 사본 ('신고 증명서', '안전성 인증서', '사업 등록증', '조종자 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
-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성능표, 사진(신고증명서 상의 신고번호를 확인 가능한 가로 15cm × 세로 10cm의 크기) - 통제시 식별자료로 활용
- 4) 항공촬영이 목적인 경우, 부록 1 호에 따른 항공촬영허가서 사본

2. 공역별 관할기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신청구역에 대한 관할기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시 제19조에 따른 협조절차를 수행한다.

제21조(검토단계) 제출된 비행승인 신청서 및 증명자료가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행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제12조제1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금지사항 저촉 여부
2. 작전성 검토 및 기타 비행계획 등을 비교 제한 여부
3. 휴전선과의 충분한 이격 여부 (군사분계선 인근 No Fly Zone 침범 가능성)

4.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는 공익목적 외의 상업 또는 여가 목적의 비행은 승인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할 수 있다.

가) 관할기관·학교·단체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훈련비행으로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부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된 경우

나) 관할기관 또는 경찰이 직접 현장통제를 하거나, 이에 준한 보안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비행

5. 각 관할기관(부대)에서 관리하는 공역 내에 위치한 국가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의 여부

6. 항공기 또는 기타 비행체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공역(관제공역 등)에서의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를 식별 및 적극적 통제가 가능한 방책의 수립 여부 (육안식별, 공지통신, 트랜스폰더 등)

제22조(회신단계) 제출된 비행승인 신청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회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비행승인 권한 내부위임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를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검토결과 통보서를 사용하여 비행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1. 제출된 비행승인 신청서가 제21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조종사 준수사항 및 다음의 비행안전의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제18조에 따른 승인시한에 맞춰 승인내용을 회송한다.

가. 관할지역의 통제기관과 통화가 가능한 연락수단(주파수, 전화 등)

나. 비행 중 비상주파수 청취 (무선통신 수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관할공역 내의 비행 중 유의사항 (항공고시보 사항 등)

라. 관할공역 통제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등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출된 비행승인 신청서가 제21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비행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행승인 불가사유를 첨부하여 불승인을 회신한다.

제23조(비행승인 이후 안전관리 단계)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이후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비행승인 기관(부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승인을 한 경우, 해당 승인 내용을 다음의 기관(부대)에 통보하여야한다.
 - 가. 지방항공청 : 해당지역 항공교통관제기구
 - 나. 군 관할부대
 - 1) 해당지역 항공교통관제기구
 - 2) 해당지역 관할 군부대
 - 3) 공군작전사령부 전투운영과 및 방공관제사령부 제31, 32전대 작전계

2. 비행 승인내용을 통보 받은 기관(부대)은 다음사항을 조치한다.
 - 가.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관할 관제공역 내 항공교통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초경량비행장치와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분리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나. 해당지역 관할 군부대는 필요시 비행승인지역에 군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안전 조치 및 감독한다. (불승인 초경량비행장치 식별 및 단속 포함)
 - 다. 공군작전사령부 및 방공관제기구(MCRC)는 조연 중인 군용기와의 안전 분리를 위한 경보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리대장 유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기관(부대)는 별지 9 호 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리대장을 5년간 유지한다.

제 7 장 위규비행 관리

제25조(위규비행 발생시 조치절차) 비행승인 및 유관기관(부대)는 제14조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또는 위규비행을 발견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및 위규비행 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위규비행한 사람의 신변을 확보(대공 용의점 확인 차원)하여 관할 경찰에 합동 현장 조사를 의뢰한다.
2. 합동 현장조사 결과 또는 경찰조사 결과가 불법사용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게 위법에 따른 조치를 의뢰하고 경찰의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3. 합동 현장조사 결과 또는 경찰조사 결과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기관(부대) 또는 관할지역의 경찰은 지방항공청으로 위규비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제26조(비행안전장애 처리) 제17조의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 부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으로 인한 비행안전장애 내용을 확인한 경우, 해당자의 차기 비행승인 요청시 불승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불법사용 등의 죄 또는 위규비행시 과태료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또는 500ft 이내 근접한 경우
3. 초경량비행자치가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충돌한 경우
4. 관할기관이 발부한 비행안전의 유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항공안전을 해칠 요인이 감지된 경우

제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 장애사항 기록유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기관(부대)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장애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유지한다.

제 8 장 행정사항

제28조(시행일) 이 지침서는 2016년 12월 19일 부터 시행하며, 2015년 10월 1일 부로 발행된' 군 관항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서'를 대체 한다.

별지 1

관제구역 · 통제구역 · 주의구역의 범위 및 요도 (제4장 관련)

- ※ 세부 구역정보(본인 위치에 해당하는 구역 등)는 다음의 인터넷 정보로 검색가능
 - 국가지도서비스(www.vworld.kr) > 항공교통 > 항공정보도(구역), 또는
 - 항공정보간행물(www.ais.casa.go.kr) > ENR 5, 6

1. 관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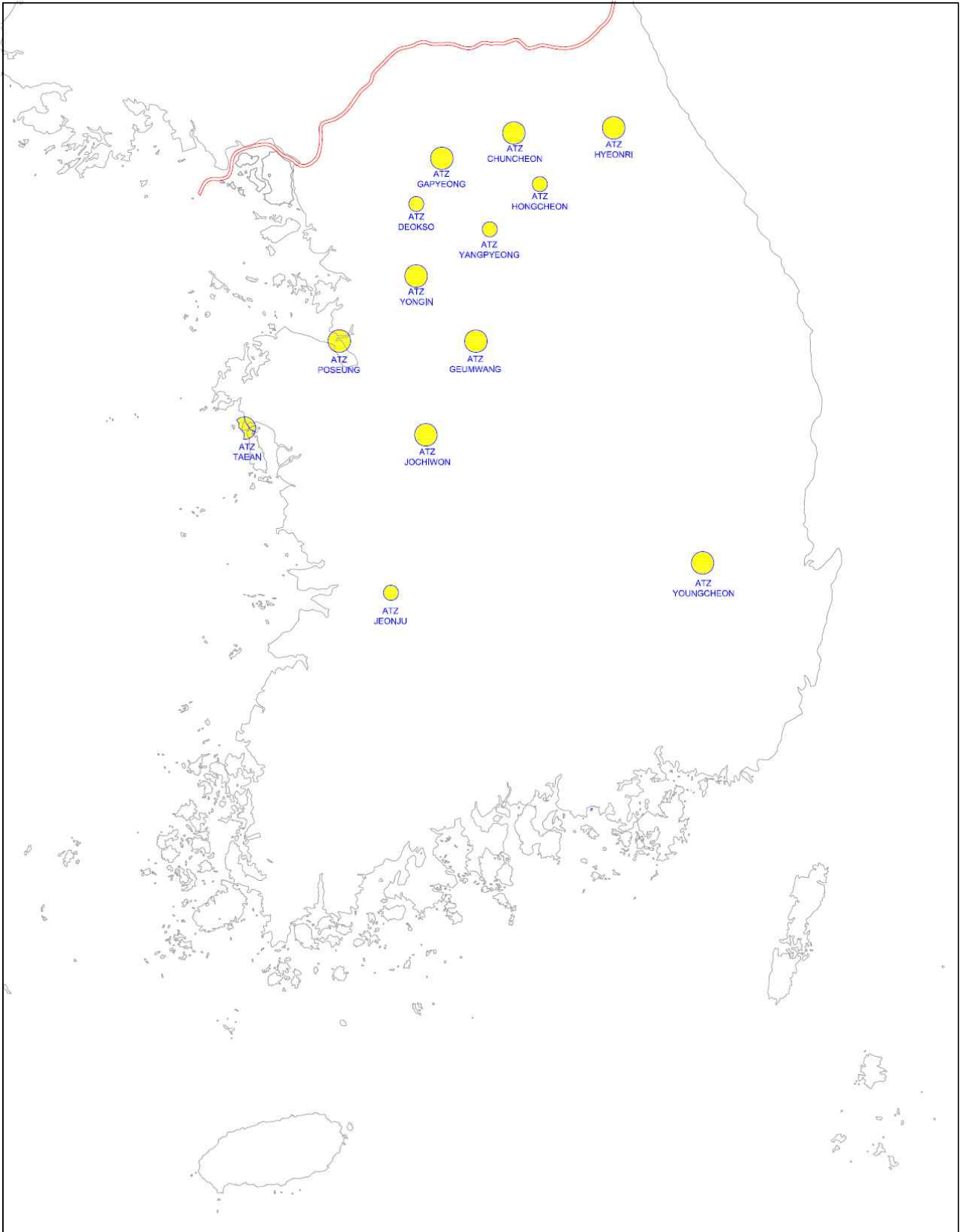
가. 관제권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	인 천	372745N 1262621E 반경 5NM	서울지방항공청
2	김 포	373325N 1264751E 반경 5NM	
3	양 양	380341N 1284009E 반경 5NM	
4	울 진	364637N 1292742E 반경 5NM	부산지방항공청
5	울 산	353536N 1292108E 반경 5NM	
6	여 수	345032N 1273702E 반경 5NM	
7	정 석	332354N 1264247E 반경 5NM	
8	무 안	345929N 1262258E 반경 5NM	
9	제 주	333044N 1262934E 반경 5NM	제주지방항공청
10	광 주	350735N 1264832E 반경 5NM	한국공군
11	사 천	350519N 1280414E 반경 5NM	
12	김 해	351050N 1285617E 반경 5NM	
13	원 주	372617N 1275737E 반경 5NM	
14	수 원	371422N 1270025E 반경 5NM	
15	대 구	355338N 1283932E 반경 5NM	
16	서 울	372645N 1270652E 반경 5NM	
17	예 천	363754N 1282118E 반경 5NM	
18	청 주	364259N 1272957E 반경 5NM	
19	강 릉	374513N 1285638E 반경 5NM	
20	충 주	370148N 1275307E 반경 5NM	
21	해 미	364216N 1262910E 반경 5NM	
22	성 무	363309N 1272909E 반경 5NM	
23	포 향	355916N 1292507E 반경 5NM	
24	목 포	344532N 1262252E 반경 5NM	
25	진 해	350829N 1284146E 반경 5NM	
26	이 천	371204N 1272819E 반경 5NM	한국육군
27	논 산	361609N 1270646E 반경 5NM	
28	속 초	380836N 1283553E 반경 5NM	
29	오 산	370526N 1270147E 반경 5NM	주한 미공군
30	군 산	355414N 1263657E 반경 5NM	
31	평택	365744N 1270153E 반경 5NM	주한 미육군

나. 비행장교통구역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	가평	374842N 1272124E 반경 3NM	SFC~1,500ft MSL	한국육군
2	양평	372959N 1273748E 반경 2NM	SFC~1,500ft MSL	
3	홍천	374212N 1275421E 반경 2NM	SFC~1,500ft MSL	
4	현리	375723N 1281859E 반경 3NM	SFC~1,500ft MSL	
5	전주	355242N 1270712E 반경 2NM	SFC~1,500ft MSL	
6	덕소	373625N 1271308E 반경 2NM	SFC~1,000ft MSL	
7	용인	371713N 1271332E 반경 3NM (R35 중첩구역은 제외)	SFC~1,500ft MSL	
8	춘천	375545N 1274526E 반경 3NM (P518 중첩구역은 제외)	SFC~1,500ft MSL	
9	영천	360132N 1284908E 반경 3NM	SFC~1,500ft MSL	
10	금왕	370008N 1273345E 반경 3NM	SFC~1,500ft MSL	
11	조치원	363427N 1271744E 반경 3NM	SFC~1,500ft MSL	
12	포승	365929N 1264827E 반경 3NM	SFC~1,000ft MSL	한국해군
13	태안	Area 1 363746N 1261510E to 363657N 1261555E to 363552N 1261555E to 363410N 1261753E to 363239N 1261738E to 태안비행장 중심(ARP) 3NM 반시계방향 원호(Arc) to 363431N 1262116E to 363520N 1261949E to 363717N 1261807E to 363839N 1261734E to 태안비행장 중심(ARP) 3NM 반시계방향 원호(Arc)	SFC~1,500ft MSL	한서대학교 (태안관제탑)
		Area 2 363839N 1261734E to 태안비행장 중심(ARP) 3NM 시계방향 원호(Arc) to 363431N 1262116E to 363520N 1261949E to 363717N 1261807E	SFC~1,000ft MSL	

비행장 교통구역 (Aerodrome Traffic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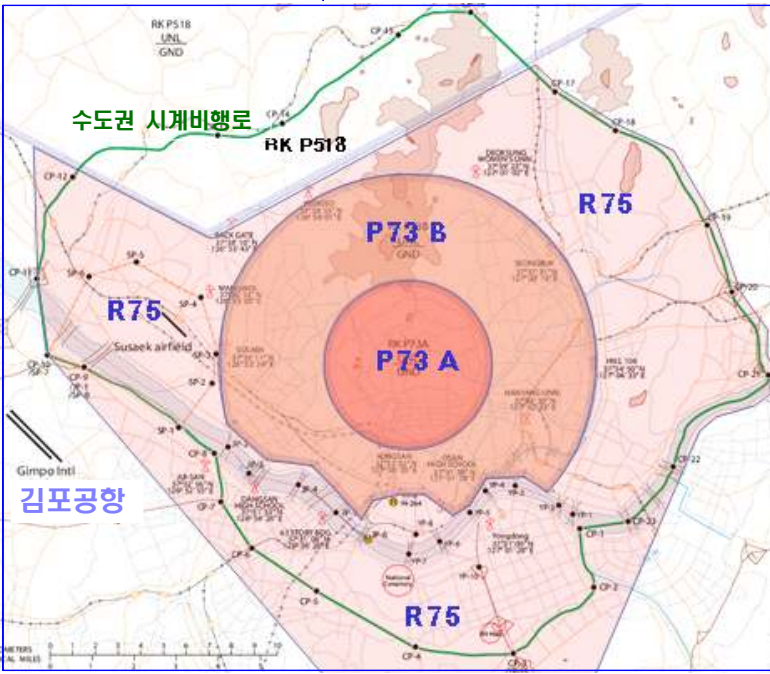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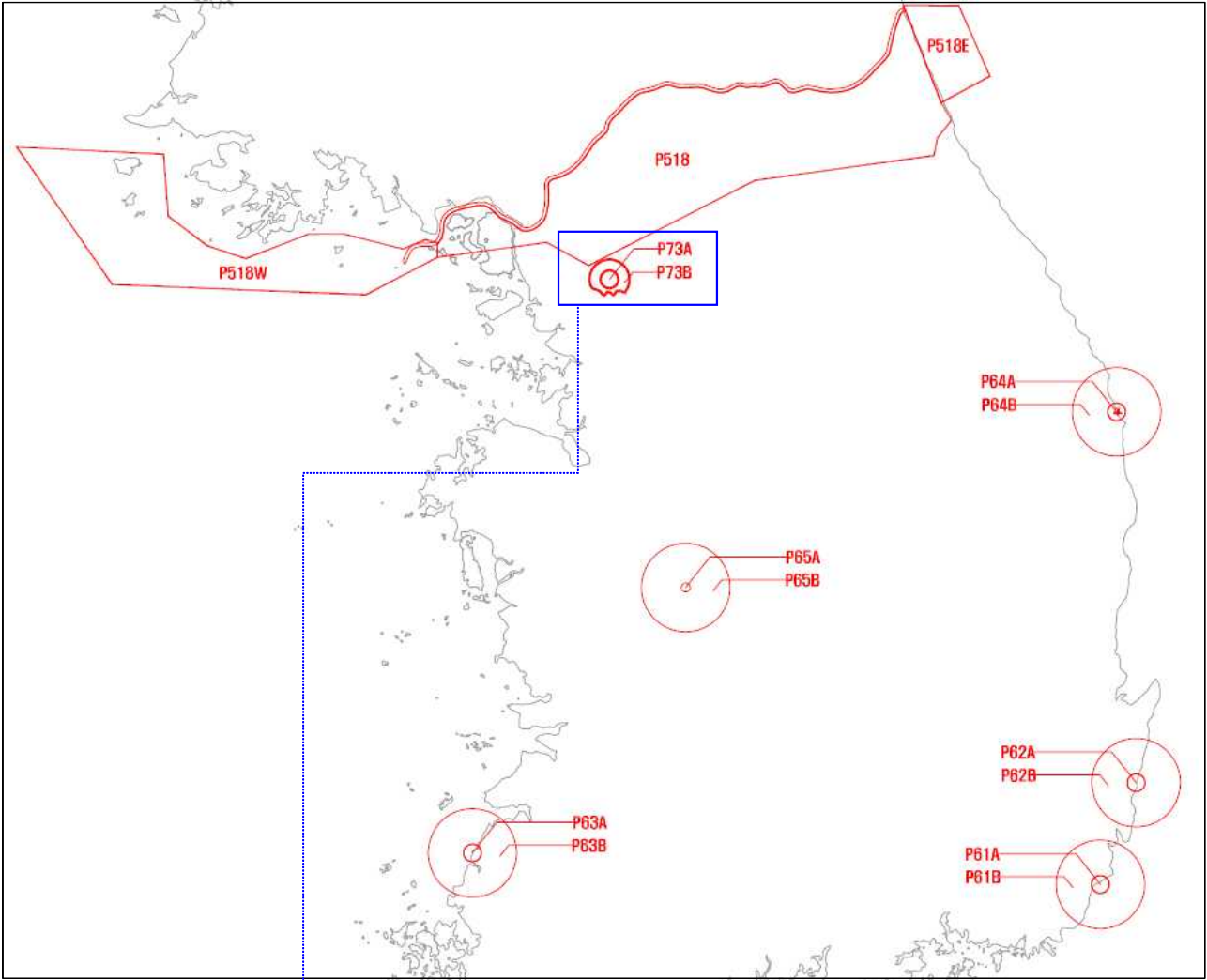


2. 통제구역

가. 비행금지구역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	P73 A	373500N	반경 2NM	SFC~UNLTD	수도방위사령부
	P73 B	1265900E	반경 2~4.5NM	SFC~UNLTD	
2	P518	373900N 1261000E to 374300N 1264100E to 373800N 1265300E to 375800N 1274000E to 380400N 1283100E to 380800N 1283200E to 381200N 1283600E		SFC~UNLTD	합동참모본부
	P518 E	383800N 1282200E to 383800N 1283800E to 382200N 1284700E to 381600N 1283300E		SFC~UNLTD	
	P518 W	380000N 1240900E to 380000N 1245100E to 374255N 1260633E to 374213N 1260951E to 373900N 1261000E to 373000N 1255000E to 373000N 1243800E		SFC~UNLTD	
3	P61 A	351900N 1291800E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1 B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4	P62 A	354200N 1292800E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2 B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5	P63 A	352429N 1262429E	반경 2NM	SFC~10,000	합동참모본부
	P63 B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6	P64 A	370600N 1292300E	반경 2NM	SFC~8,000	합동참모본부
	P64 B		반경 2~10NM	SFC~FL180	부산지방항공청
7	P65 A	362536N 1272211E	반경 1NM	SFC~8,000	합동참모본부
	P65 B		반경 1~10NM	SFC~FL180	서울지방항공청

비행금지구역 (Prohibited Areas)



< P73 인근지역 확대도 >

- 비행금지구역 : P73A,B
- 비행제한구역 : R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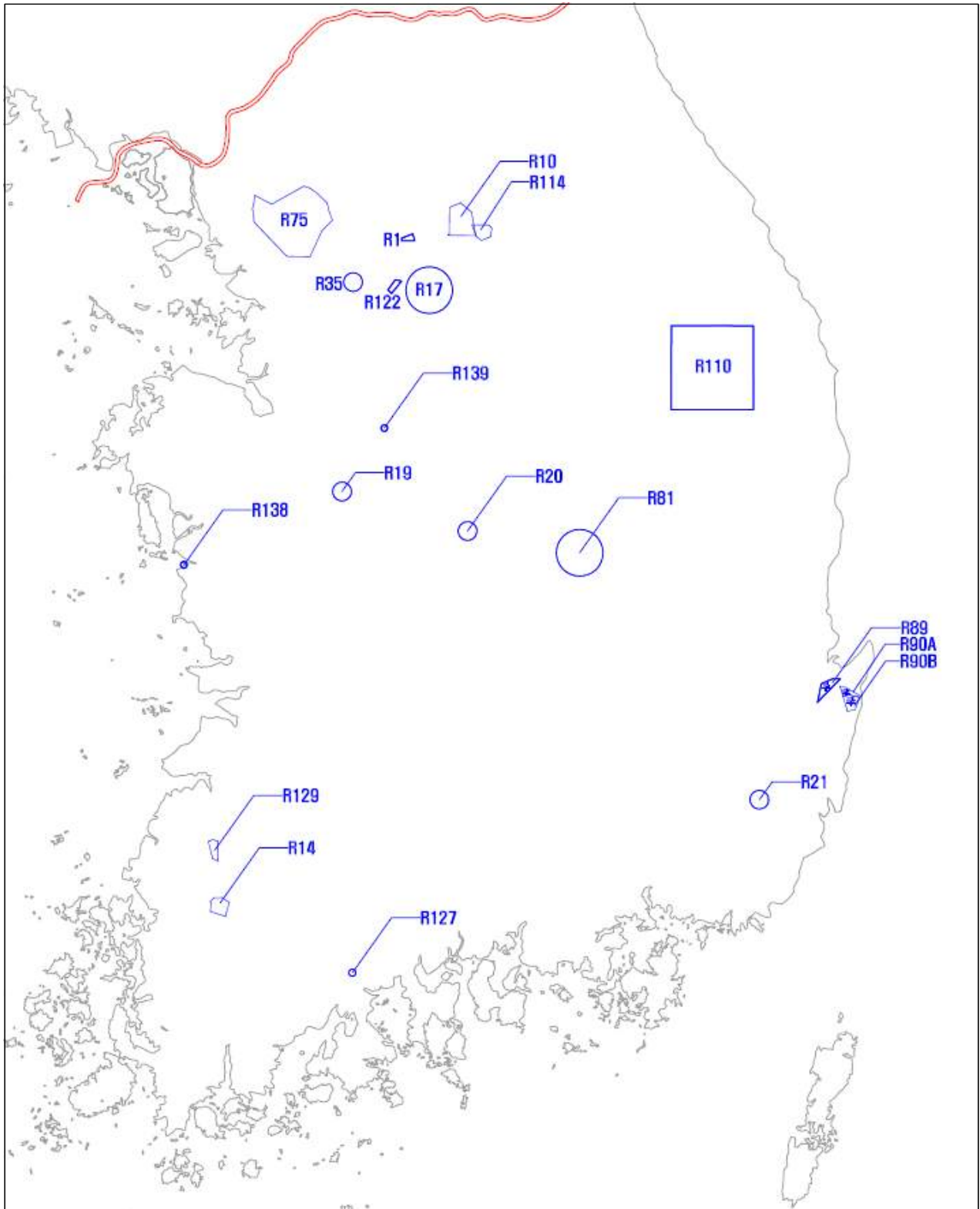
나. 비행제한구역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	R1	373100N 1272800E to 373200N 1273100E to 373100N 1273200E to 373100N 1272800E	SFC~6,000ft MSL	한국육군
2	R10	373200N 1274100E to 373200N 1274800E to 373700N 1274700E to 373900N 1274400E to 373800N 1274100E	SFC~5,000ft MSL	
3	R14	350900N 1264200E to 350900N 1264400E to 350800N 1264600E to 350500N 1264500E to 350600N 1264100E to 350746N 1264117E to 350806N 1264056E	BY NOTAM	한국공군
4	R17	372010N 1273552E 반경 5NM	SFC~FL150 MSL	한국육군
5	R19	363640N 1271328E 반경 2NM	SFC~3,400ft MSL	
6	R20	362836N 1274700E 반경 2NM	SFC~5,000ft MSL	
7	R21	353118N 1290430E 반경 2NM	SFC~5,000ft MSL	
8	R35	372138N 1271523E 반경 2NM	SFC~2,500ft MSL	
9	R75	373949N 1264824E to 373752N 1264813E to 373701N 1264754E to 373530N 1264817E to 373409N 1264824E to 372653N 1265722E to 372653N 1270338E to 373233N 1270647E to 373447N 1270930E to 373656N 1270830E to 373827N 1270800E to 374033N 1270513E to 374136N 1270317E to 374200N 1270140E to 373758N 1265259E	SFC~10,000ft MSL	수도방위 사령부
10	R81	362410N 1281652E 반경 5NM	SFC~FL220 MSL	한국공군

11	R89	355600N 1292100E to 355700N 1292400E to 355700N 1292600E to 355200N 1292000E	SFC~1,000ft MSL	한국해병
12	R90A	355536N 1292547E to 355521N 1292717E to 355325N 1293116E to 355310N 1293101E to 355340N 1292826E to 355330N 1292634E	SFC~2,000ft MSL	
13	R90B	355330N 1292634E to 355340N 1292826E to 355310N 1293101E to 355026N 1292645E to 355012N 1292745E	SFC~5,500ft MSL	
14	R110	371300N 1284100E to 371300N 1290300E to 365500N 1290300E to 365500N 1284138E	SFC~FL250 MSL	한국공군
15	R114	373420N 1274707E to 373420N 1275142E to 373335N 1275232E to 373150N 1275212E to 373100N 1274942E to 373200N 1274812	SFC~3,000ft MSL	한국육군
16	R122	372215N 1272641E to 372202N 1272823E to 371919N 1272543E to 372005N 1272445E to	SFC~3,700ft MSL	
17	R127	345326N 1271825E 반경 0.75NM	SFC~3,000ft MSL	
18	R129	352059N 1264007E to 352124N 1264119E to 352105N 1264233E to 351649N 1264240E to 351720N 1264120	SFC~3,500ft MSL	한국공군
19	R138	362011N 1263153E 반경 0.7NM	SFC~5,400ft MSL	
20	R139	365026N 1272425E 반경 0.7NM	SFC~5,400ft MSL	

※ 상기 내용은 비행제한구역 중 지표면부터 시작하는 비행제한구역 만을 정리한 것임.

비행제한구역 (Restricted Areas)



※ 상기 내용은 비행제한구역 중 지표면부터 시작하는 비행제한구역 만을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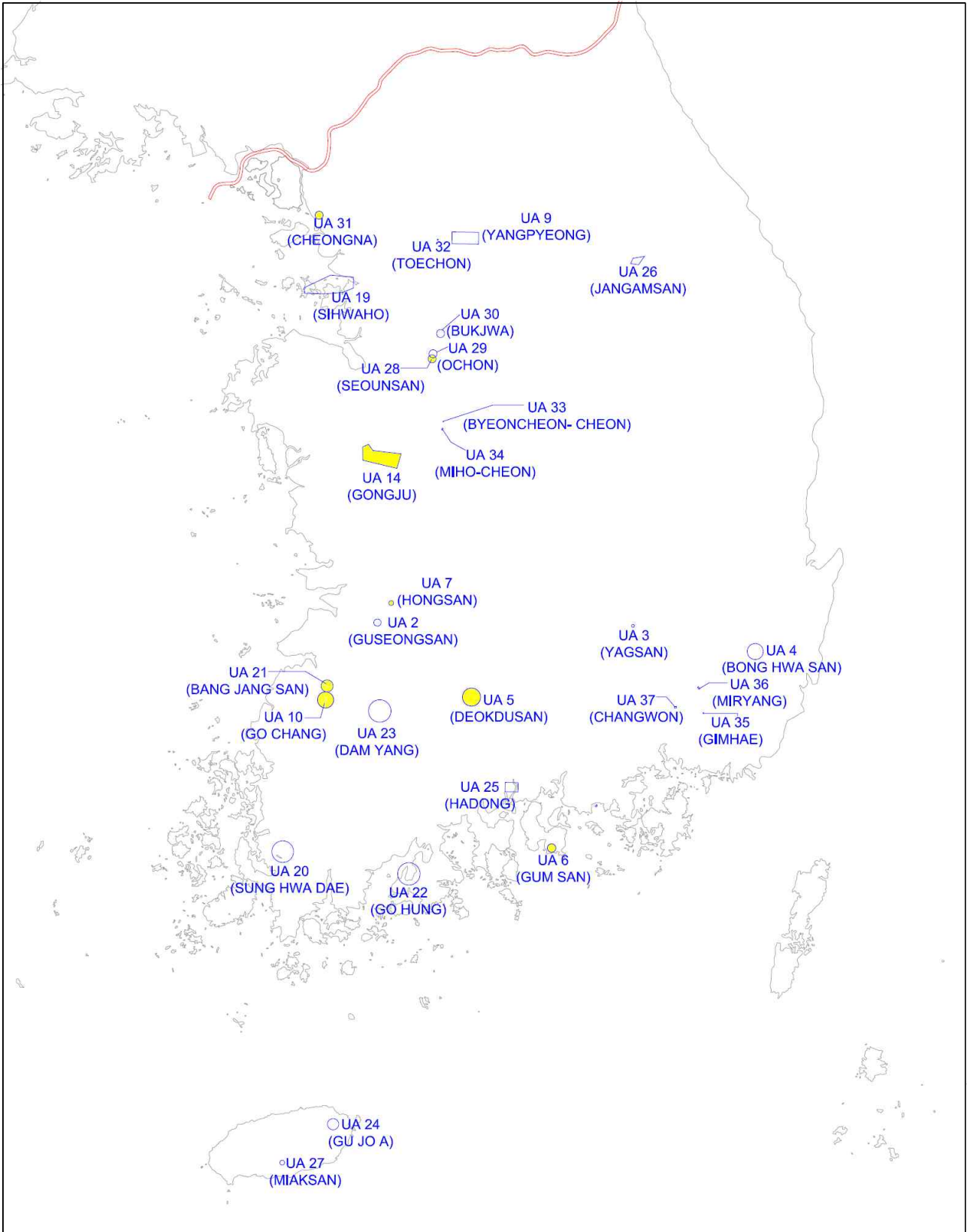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	UA2 구성산	354421N 1270027E 반경 1.0NM	SFC~500ft AGL	지방항공청
2	UA3 약산	354421N 1282502E 반경 0.4NM		
3	UA4 방화산	353731N 1290532E 반경 2.2NM		
4	UA5 덕두산	352441N 1273157E 반경 2.4NM		
5	UA6 금산	344411N 1275852E 반경 1.1NM		
6	UA7 홍산	354941N 1270452E 반경 0.7NM		
7	UA9 양평	373010N 1272300E to 373010N 1273200E to 372700N 1273200E to 372700N 1272300E		
8	UA10 고창	352311N 1264353E 반경 1NM		
9	UA14 공주	363225N 1265617E to 363045N 1265746E to 363002N 1270713E to 362604N 1270553E to 362805N 1265427E to 363141N 1265417E		
10	UA19 시화	371715N 1264215E to 371724N 1265000E to 371430N 1265000E to 371315N 1264628E to 371245N 1264029E to 371244N 1263342E to 371414N 1263319E		
11	UA20 성화대	344157N 1263101E 반경 3.0NM		
12	UA21 방장산	352658N 1264417E 반경 1.6NM		
13	UA22 고흥	343640N 1271221E 반경 3.0NM		
14	UA23 담양	352030N 1270148E 반경 3.0NM		
15	UA24 구조아	332841N 1264922E 반경 1.5NM		
16	UA25 하동	350147N 1282419E to 372410N 1282810E to 372153N 1282610E to 372211N 1282331E		
17	UA26 장암산	372338N 1282419E to 372410N 1282810E to 372153N 1282610E to 372211N 1282331E		
18	UA27 미악산	331800N 1263316E 반경 0.7NM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19	UA28 서운산	365550N 1271659E 반경 1.1 NM	SFC~500ft AGL	지방항공청
20	UA29 오천	365711N 1271716E 반경 1.1 NM		
21	UA30 북좌	370242N 1271940E 반경 1.1 NM		
22	UA31 청라	373354N 1263730E to 373400N 1263744E to 373351N 1263750E to 373345N 1263736E		
23	UA32 토천*	372800N 1271809E 반경 0.2 NM		
24	UA33 변천천*	363904N 1272103E to 363902N 1272111E to 363850N 1272106E to 363852N 1272059E		
25	UA34 미호천*	363710N 1272048E to 363705N 1272105E to 363636N 1272049E to 363650N 1272033E		
26	UA35 김해*	352057N 1284815E to 352101N 1284825E to 352047N 1284833E to 352043N 1284823E		
27	UA36 밀양*	352801N 1284642E to 352729N 1284714E to 352717N 1284659E to 352750N 1284627E		
28	UA37 창원*	352238N 1283856E to 352238N 1283931E to 352216N 1283931E to 352213N 1283856E		

※ 도표 상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외의 전지역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구역에 해당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3. 주의공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구분	수평범위	수직범위	통제기관
훈련구역 (CATA)	※ 국가지도서비스 참조 www.vworld.kr > 항공교통 > 항공정보도(공역) > 위험 · 경계 · 군 훈련구역 등		항공교통센터
군작전구역 (MOA)	또는 세부정보는 항공정보간행물(AIP) 참조 www.ais.casa.go.kr > ENR 5, 6 > MOA · Alert area 등		공군작전사령부
위험구역 (Danger Area)	* 주의공역은 대부분 3,000ft 이상의 고도에 설정		
경계구역 (Alert Area)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신청 지역이 기타 주의공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시 공군작전사령부(공역관리과 : 031-669-7095)로 문의 후 비행승인 신청		

별지 2

초경량비행장치 유형별 비행승인 대상 구역 (제16조 제3항 관련)

1. 비사업용 초경량비행장치

(범례 : 비행승인 면제 고도제한)

구 분		비행승인 대상구역											
		관제 구역			비관제 구역	통제 구역			주의 구역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		금지	제한	UA					
1	동력비행장치		○	○	○	○	○	○	×	○			
2	인력활공기	행글라이더	○	○	○	×	○	○	×	○			
3	기구류	자유기구	○	○	○	○	○	○	×	○			
		계류식기구	○	○	○	150m ↑ 150m ↓	○	○	×	○			
		무인 계류식	○	○	○	×	○	○	×	○			
4	회전익 비행장치		○	○	○	○	○	○	×	○			
5	동력 페러 글라이더		○	○	○	○	○	○	×	○			
6	무인 비행장치	무인동력 비행장치	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	×	○	○	×	○	
			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150m ↑ 150m ↓	150m ↑ 150m ↓	×	○	150m ↑ 150m ↓	×	150m ↑ 150m ↓	
			비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	○	○	○	○	×	○
			비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150m ↑ 150m ↓	150m ↑ 150m ↓	×	○	150m ↑ 150m ↓	×	150m ↑ 150m ↓	
		무인 비행선	계류식	자체중량 12kg 초과	○	○	○	×	○	○	○	×	○
			계류식	자체중량 12kg, 7m, 이하	○	150m ↑ 150m ↓	150m ↑ 150m ↓	×	○	150m ↑ 150m ↓	×	150m ↑ 150m ↓	
			비계류식	자체중량 12kg 초과	○	○	○	○	○	○	○	×	○
			비계류식	자체중량 12kg, 7m, 이하	○	150m ↑ 150m ↓	150m ↑ 150m ↓	×	○	150m ↑ 150m ↓	×	150m ↑ 150m ↓	
7	낙하산류		○	○	○	×	○	○	×	○			
8	기 타	농업지원, 가축병 방역 등	○	○	○	×	○	○	×	○			

*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군 비행장을 제외한 민간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중심 반경 3km, 지상고도 150m(500ft)의 범위 내에서는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 또는 이착륙장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 비행승인 불필요

2. 사업용 초경량비행장치

(범례 : 비행승인 면제 고도제한)

구 분			비행승인 대상공역							주의 공역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	통제 공역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		금지	제한	UA			
1	동력비행장치		○	○	○	○	○	○	○	×	○	
2	인력활공기	행글라이더	○	○	○	○	○	○	○	×	○	
3	기구류	자유기구	○	○	○	○	○	○	○	×	○	
		계류식기구	○	○	○	150m ↑ 150m ↓	○	○	○	×	○	
		무인 계류식	○	○	○	○	○	○	○	×	○	
4	회전익 비행장치		○	○	○	○	○	○	○	×	○	
5	동력 페러 글라이더		○	○	○	○	○	○	○	×	○	
6	무인 비행장치	무인동력 비행장치	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	×	○	○	×	○	
			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150m ↑ 150m ↓	150m ↑ 150m ↓	×	○	150m ↑ 150m ↓	×	150m ↑ 150m ↓	
			비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	○	○	○	○	×	○
			비계류식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150m ↑ 150m ↓	150m ↑ 150m ↓	×	○	150m ↑ 150m ↓	×	150m ↑ 150m ↓	
		무인 비행선	계류식 자체중량 12kg 초과	○	○	○	×	○	○	○	×	○
			계류식 자체중량 12kg, 7m, 이하	○	150m ↑ 150m ↓	150m ↑ 150m ↓	×	○	150m ↑ 150m ↓	×	150m ↑ 150m ↓	
			비계류식 자체중량 12kg 초과	○	○	○	○	○	○	○	×	○
			비계류식 자체중량 12kg, 7m, 이하	○	150m ↑ 150m ↓	150m ↑ 150m ↓	×	○	150m ↑ 150m ↓	×	150m ↑ 150m ↓	
7	낙하산류		○	○	○	○	○	○	○	×	○	
8	기 타	농업지원, 가축병 방역 등	○	○	○	×	○	○	○	×	○	

- *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 영리 목적으로 사용시 UA를 제외한 전공역에서 비행승인 필요. (단,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와 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비행선의 경우는 비사업용과 같이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150m 이하 고도에서 비행승인 없이 운행 할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 / 2016. 7. 4. 부)
- * 군 비행장을 제외한 민간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중심 반경 3km, 고도 150m(500ft)의 범위 내에서는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 또는 이착륙장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 비행승인 불필요

별지 3**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제12조 제1항 관련)**

고도	비행시정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1. 해발 3,050m(10,000ft) 미만에서 해발 900m(3,000ft) 또는 장애물 상공 300m(1,000ft) 중 높은 고도 초과	5,000m	수평 1,500m, 수직 300m
2. 해발 900m(3,000ft) 또는 장애물 상공 300m(1,000ft) 중 높은 고도 초과	5,000m	수평 1,500m, 수직 300m
	5,000m	지표면 육안 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별지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제18조 제1항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비행장치	종류/형식	용도
	소유자 (전화:)	
	①신고번호	②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비행계획	일시 또는 기간(최대 30일)	구역
	비행목적/방식	보험 [] 가입 [] 미가입
	경로/고도	

조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③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탑재장치	무선전화송수신기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할기관(부대) 귀하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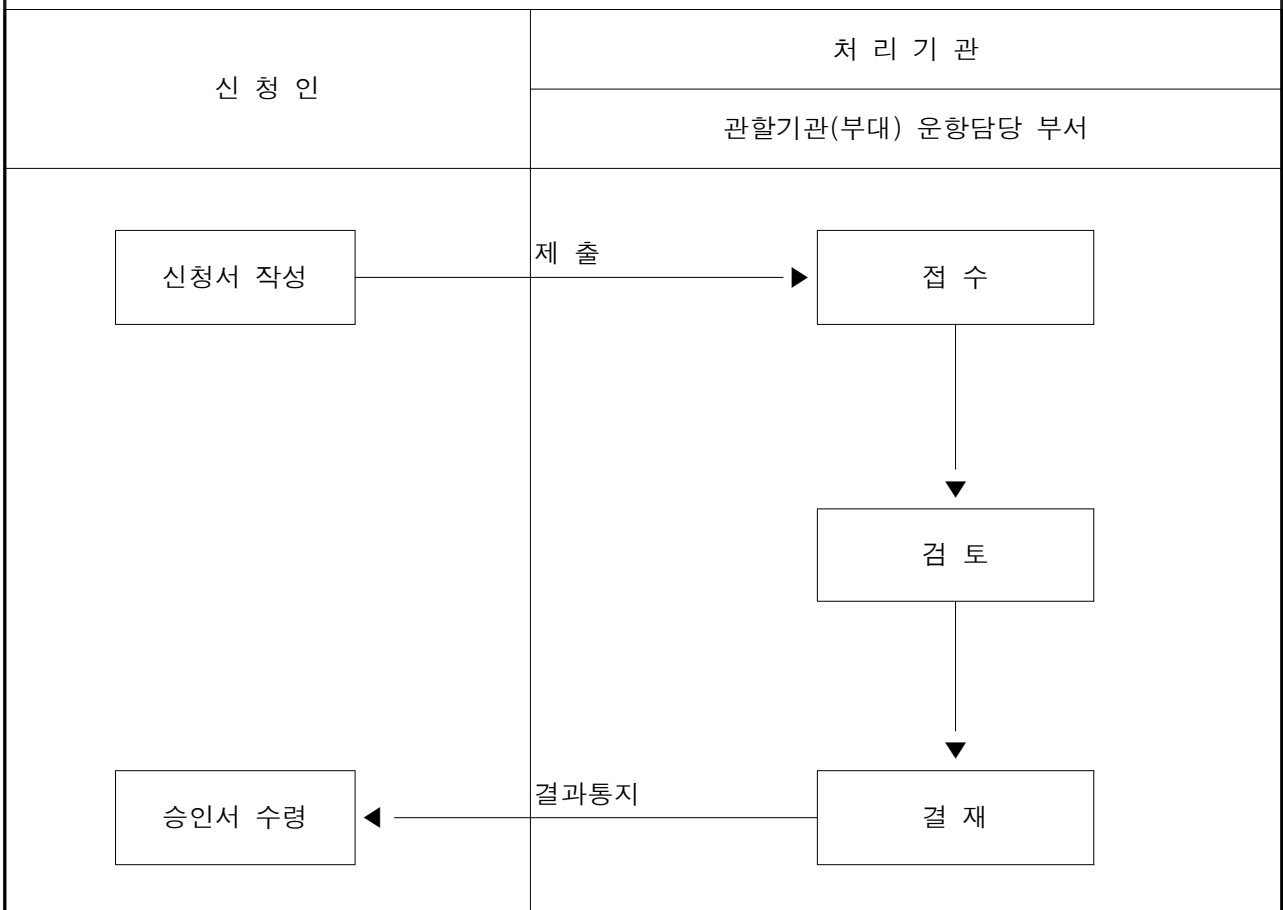
-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청란 중 제①번(신고번호) 또는 제②번(안전성인증서번호)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제③번(동승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5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검토결과 통보서 (제22조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검토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승인	불승인
비행승인	조종자 성명/명칭		비행장치 종류/형식		
	조종자 연락처		신고 번호		
	일시 또는 기간(최대 30일)		구역		
	비행목적/방식				
	경로/고도				
조종자 유의사항					
불승인 사유					
<p>「항공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 신청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국 방 부 장 관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직인 (생략) </div>	

제 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 1. 신고번호:
- 2. 종류 및 형식:
- 3. 제작자 및 제작번호:
- 4. 용도: 비영리 영리
- 5.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 6. 소유자 주소:

「항공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에 대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항공청장

직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증서 번호 :

1. 종 류		2. 신 고 번 호	
3. 형 식		4. 발 동 기 형 식	
5. 제 작 번 호		6. 제 작 일 자	
7. 제 작 자 주 소			
8. 제작자성명(명칭)			
9. 키 트 제 작 자 성 명 (명 칭)			
10. 설계자성명(명칭)			
11. 인증서 만료일			
12. 비 고			

이 안전성인증서는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위의 초경량비행장치가 운용기준을 준수하여 정비하고 비행할 경우에만 안전성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제 호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1. 상호(법인명)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4. 주소(소재지)
5. 사업범위
6. 사업소
7. 등록연월일

「항공법」 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을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직인

별지 9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리대장 (제18조 제1항 관련)

접수 번호	비행일시	비행공역	조종자	기종 (신고번호)	목적	승인	비고
1	9.1. 1500~17:00	R75 광나루	홍길동	무인비행장치 (S1234)	취미활동	○	
2	9.2. 1300~15:00	P73A	강드론	드론(12kg 이하)	취미촬영	×	공익목적 외
3	9.3. 0500~07:00	P73B	이상무	드론(12kg 이하)	항공촬영 (보도자료)	○	수방사 현장통제
4	9.4. 0900~11:00	P518 의정부일대	박항공	드론(12kg 이하)	취미활동	○	군부대 현장통제
5							
6							
7							
8							
9							
10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국가 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32조, 제33조의 항공사진촬영 허가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책임지역 부대장 및 기무사령부와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이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적용한다.

3. 보안책임

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보안업무규정을 적용 받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책임이 있으며, 소속인원은 부여된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나. 국군기무사령관 및 책임지역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

가. 항공사진 촬영신청자는 촬영 7일전(천재지변에 의한 긴급보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촬영대상·일시·목적·촬영자 인적 사항 등을 명시한 항공사진 촬영허가신청서(첨부 1 서식)를 제출한다.

※ 항공사진 촬영 허가관련 문의 :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정책과

– 전화(02-748-2344), FAX(02-796-0369) [확인 : 02-748-0543]

※ 지역별 항공사진 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 첨부 2 참조

나. 책임부대 부대장은 촬영목적·용도 및 대상시설·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촬영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 1) 국가보안시설 시설 및 군사보안보안 시설
-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다. 감독기관의 장은 촬영금지 시설에 대하여 국익목적 또는 국가이익상 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책임부대장에게 촬영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은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라. 국방부장관은 항공촬영 허가 시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업무를 고려하여 촬영허가 기간을 관공서(최장 3개월), 촬영업체 / 개인 (최장 1개월)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5. 항공촬영 보안조치

가.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촬영을 위한 항공기 이착륙 시 승무원·탑승자의 신원과 촬영 필름의 수량을 확인하고 촬영 불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담당관을 탑승시켜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나.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촬영 금지시설과 지형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사진을 인화토록 하고, 필요시 항공사진 및 필름 취급기관(업체)으로 하여금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각 지역 책임부대장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무인UAV, 열기구 등)를 이용하여 촬영시 조정 및 촬영자의 신원을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인원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촬영 전 보안교육 및 촬영 후 영상(사진)에 대해서 보안조치를 실시한다.

6. 비행승인

- 가. 항공촬영을 위한 비행 시에는 항공촬영 허가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합참·수방사 등)의 별도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나.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촬영일정, 촬영대상, 촬영관계자, 항공기 이착륙지 등 촬영 허가된 내용을 변경(3차까지 가능) 할 경우에는 촬영 종료 5일전까지 승인한 부대에 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부 1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사진의 용도 (구체적으로)			촬영구분 (정·동·시각등)		
촬영장비 명칭 및 종류		규격		수량	미리 통
항공기종			항공기명		
이륙 일시 장소			착륙 일시 장소		
촬영지역 (행정구역명으로 정확히 기재)				목표물	
촬영고도			좌 표		
항 로		순항 고도		항 속	
촬영관계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기 장					
승 무 원					
촬영 기사					
기 타					

- 담당자 연락처 :
- 수신받을 fax번호 :

첨부 2 :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연락처

구분	연락처	FAX 번호
서울(강동, 송파, 서초, 강남, 관악, 동작, 영등포구로, 금천, 양천, 강서)	02-801-6205	02-898-4647
서울(마포, 용산, 중구, 은평, 서대문, 종로, 강북, 성북, 광진, 동대문, 성동, 노원, 도봉, 중랑)	02-380-6204	02-381-2113
강원도(화천, 춘천)	033-249-6213	033-242-8232
강원도(인제, 양구)	033-460-7701	3corps2210@army.mil.kr
강원도(고성, 양양, 속초, 동해, 삼척)	033-670-6221	033-671-8031
강원도(원주, 횡성, 평창, 홍천, 영월, 정선, 태백)	033-741-6204	033-732-5897
광주/전남	062-260-6204	062-264-9830
대전/충남/세종	042-829-6205	044-853-0112
전북	063-640-9205	063-644-8978
충북	043-835-6205	043-835-6979
경남(진해 제외)	055-259-6204	055-259-6113
대구/경북	053-320-6204~5	053-321-2014
부산/울산/양산	051-730-6205	051-746-6432
과주, 고양, 연천군	031-981-2213	1corps2210@army.mil.kr
포천(일동면, 이동면), 철원	031-531-0555 교환 → 2215	5corps2210@army.mil.kr
포천(일동면, 이동면 제외 전지역),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031-530-2214	031-530-1560
남양주(별내면)	031-640-2215	7corps2212@army.mil.kr
김포(양촌, 대곶면), 인천, 부천	032-510-9204	032-518-8470
안양, 화성, 수원, 평택, 광명, 시흥 안산, 오산, 군포, 의왕, 과천	031-290-9209	031-294-7746
용인, 이천, 하남, 광주, 성남,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별내면 제외 전지역)	031-329-6220	031-339-8083
포항	054-290-3222	054-290-7398
김포(양촌면, 대곶면 제외 전지역), 강화도	032-454-3222	032-454-3010
제주	064-905-3211	064-905-3008
진해(부산신항 구역 포함)	055-549-4172~3	055-549-4698

자 주 묻 는 질 문

Q 1.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제약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 1. No (X)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2.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 3. 초경량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자유롭게 비행 할 만한 공간이 없다 ?

A 3. No (X)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2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Q 4. 항공사진 촬영 승인신청과 허가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

A 4.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각 책임지역 담당 부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이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 문서(공공기관의 경우), 팩스(일반업체의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 각 책임지역 담당부대별 연락처 : 별지 참조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목적의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Q 5. 모든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A 5. 명백히 주요 국가/군사시설이 없는 곳이며,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국방부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 비행금지구역(공익 목적 등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

Q 6.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6.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비행승인 신청시 항공사진 촬영 목적의 비행계획시, 먼저 국방부로 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비행승인 신청서를 공역별 관할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